

보험연구원

R E P O R T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보험 규제 변화(2)

-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법하게 성립된 계약관계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 청약철회권(제46조)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 청약 후



일정 기간 내 사유와 관계 없이

청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 권리 확대

▣ 청약철회권 적용 기간

- 상품 종류별 차등 적용 -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자문계약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 등 지급일로부터 14일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현행 보험업법의
규정과 동일



금융소비자 권리 확대

▪ 위법계약 해지권(제47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된 제도

판매행위 규제 위반 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 가능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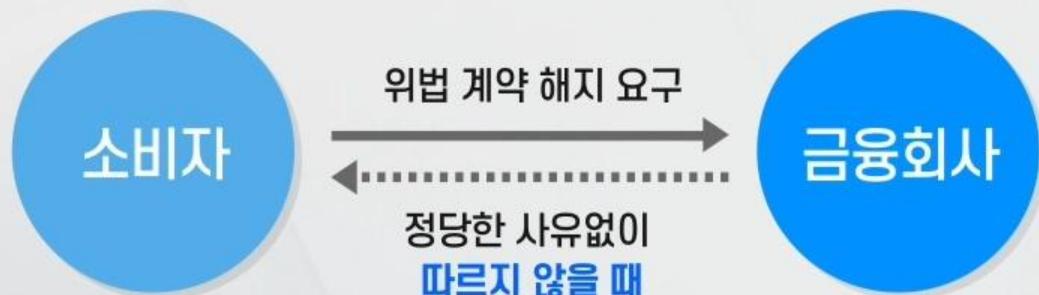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권리 행사 기간은 금융상품 별 시행령으로 규정(5년 이하)

▣ 위법계약 해지권(제47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가능



금융소비자 권리 확대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제한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

일부 예외적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가능

대출 계약 후
3년 이내 상환

타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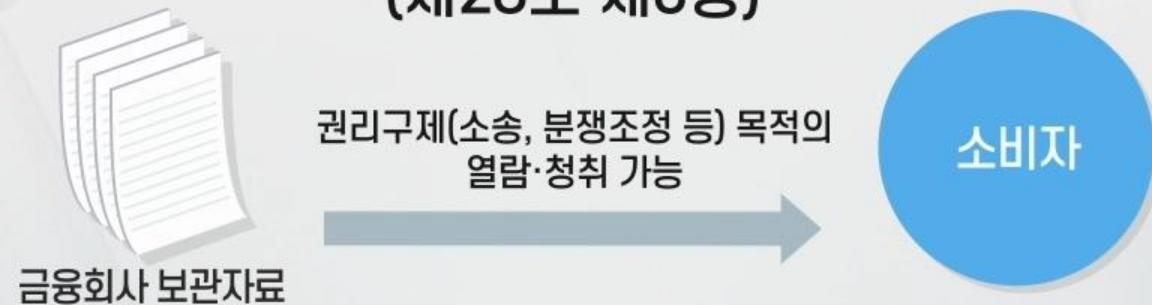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실효적인 권리 구제

(분쟁조정 절차 개선, 소송수행 부담 완화)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 보장 (제28조 제3항)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하거나 거절될 수 있음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거절할 수 있는 경우

소송중지제도 및 조정이탈금지제도

(제41조)

(제42조)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금융분쟁 조정절차의 실효성 제고

분쟁조정 진행

2천만 원 이하 제소 불가

소송 제기

법원의 소송 절차 중지

분쟁 조정 절차 이탈

분쟁조정안의 법적 구속력은 양 당사자 수락 시에만 발생

손해배상 관련 입증책임 전환

(제44조 제2항)



민법 상 입증 원칙 일부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수정

금융회사의 사용자책임 (제45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체결 대리·중개 과정 위법행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보험업법의 사용자 책임 규정과 같은 맥락



▣ 금융소비자보호법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금융교육을 위한 평가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등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제29조)

(제30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건전한 금융시장질서 구축

금융위원회의
의무

소비자의 금융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정기적인 금융역량 조사를
통한 정책 반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금융회사 등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수립 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과 보험규제 변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취지 및 기대효과

-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도입으로 규제공백 및 규제차익 방지
- 금융소비 전 과정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 개별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필요한 금융상품 구매 가능
- 불완전판매에 대한 실효적 구제

보험규제 변화에 대한 주안점

- 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 변화는 금융당국에서 마련될 하위 법령 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
- 신규 도입 제도 및 달라지는 규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적용 필요

본 저작물은 보험연구원 발간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연수원과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